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목 기준

영역	과목	기준 학점
기초의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공중보건학, 의학용어	17학점
전문 응급처치학 총론	응급구조학개론, 환자구조와 이송(실습을 포함한다), 재난관리학, 상담·구조·이송 관련 교과목	12학점
응급 환자평가 및 관리	응급환자평가(실습을 포함한다), 응급환자관리(실습을 포함한다),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관련 교과목	12학점
전문 응급처치학 각론	심전도(실습을 포함한다), 기본인명소생술(실습을 포함한다), 전문심장소생술(실습을 포함한다), 전문외상처치학(실습을 포함한다), 전문내과응급처치학, 전문기도관리(실습을 포함한다), 특수상황응급처치(임산부, 소아, 노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등)	33학점
법령	응급의료관련 법령	3학점
통합 실습	통합시뮬레이션(실습을 포함한다), 현장실습[임상현장실습(응급의료기관 등에서 36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한다) 및 구급현장실습(소방서 등에서 18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한다)]	15학점

2.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인력 기준

- 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20명당 1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할 것
- 나. 교원 중 전임교원의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다. 전임교원 중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 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라. 실습이 가능한 조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

- 가. 교육시설 기준

시설명	기준
강의실	(1m ² ×교육생 수)+16.5m ² 이상
실습실	(1m ² ×교육생 수)+16.5m ² 이상

비고

1. 강의실은 학년별로 1개 이상 갖추되, 다른 학과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실습실은 학과별로 1개 이상 갖추되, 실습에 지장이 없는 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고, 다른 학과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장비 기준

장비명		기준
구급차 또는 구급차 모형		1개 이상
중증도 분류 훈련 세트		1세트 이상
다수사상자 도상 훈련키트		교육생 15명당 1세트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교육생 3명당 1개
기본 심폐소생술 마네킹	성인(전신)	교육생 10명당 1개
	성인(상반신)	교육생 5명당 1개
	소아	교육생 10명당 1개
	영아	교육생 5명당 1개
성인 전문심장소생술 시뮬레이터		교육생 30명당 1개
교육용 수동제세동기		교육생 15명당 1개
기계식 가슴압박 소생기		교육생 30명당 1개
12유도 심전도 측정기계		교육생 30명당 1개
기도유지 마네킹	성인	교육생 5명당 1개
	소아	교육생 15명당 1개
	영아	교육생 15명당 1개
	기도폐쇄	교육생 5명당 1개
비디오 후두경		교육생 15명당 1개
이동형 인공호흡기		1개 이상
기관 내 삽관 세트		교육생 5명당 1개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교육생 10명당 1개
성문 외 기도기	후두 마스크	교육생 5명당 1개
	후두관 기도기	교육생 5명당 1개

	아이 겔	교육생 5명당 1개
휴대용 산소소생기		교육생 15명당 1개
휴대용 흡인기		교육생 5명당 1개
수동식 인공호흡기	성인	교육생 5명당 1개
	소아	교육생 15명당 1개
	영아	교육생 5명당 1개
전신 마네킹	구조실습	교육생 10명당 1개
	외상처치	교육생 10명당 1개
경추보호대 세트		교육생 2명당 1개
외상표시 모듈세트		교육생 15명당 1개
지혈실습 마네킹		교육생 10명당 1개
긴 척추 고정판		교육생 5명당 1개
차량 구출 고정대		교육생 5명당 1개
골반 고정대		교육생 10명당 1개
주 들것		교육생 15명당 1개
그 밖의 들것	분리형	교육생 10명당 1개
	바구니	교육생 30명당 1개
	가변형	교육생 10명당 1개
	계단형	교육생 30명당 1개
부목	공기	교육생 10명당 1개
	진공	교육생 10명당 1개
	견인	교육생 10명당 1개
	패드	교육생 10명당 1개
산소포화도 측정기		교육생 5명당 1개
혈당 측정기		교육생 5명당 1개
정맥주사 마네킹		교육생 5명당 1개
근육주사 모형		교육생 5명당 1개
분만 마네킹		교육생 10명당 1개
분만 세트		교육생 10명당 1개
응급 침대		교육생 30명당 1개

비고

1. 위 표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과목 기준, 인력기준, 교육시설 및 장

비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위 표 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장비 외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